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 |
|--------|---------|
| 선 람 | 기 관 의 장 |
| | |

제642호 2019. 12. 26.(목)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89호 사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변경 및 시행계획 수립 고시 ----- 1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1378호 소하천의 점용허가 공고 ----- 9
- 사천시 공고 제1390호 어업면허 사항 공고 ----- 10
- 사천시 공고 제1395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 11

| | | | | | | | | | | |
|--------|--|--|--|--|--|--|--|--|--|--|
| 회 람 |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 642 호

사천시 고시 제2019-289호

사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변경 및 시행계획 수립 고시

사천시 고시 제2018-179(2018. 10. 11.)호로 기본계획 수립 고시된 「사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기본계획 변경 및 시행계획 수립 내용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기본계획 변경 및 시행계획 수립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2월 26일

사 천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사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 사업의 목적 : 본 사업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사업비 : 5,950백만원
4. 주요 사업내용
가. 기본계획 대비 시행계획 변경 내용

| 사업 분야 | 세부사업 | 사업개요 | 사업비(백만원) | | 비고 |
|----------|------|------|----------|-------|----|
| | | | 기본계획 | 시행계획 | |
| 합 계 | | | 5,950 | 5,950 | |
| 기초생활기반확충 | | | 3,740 | 4,323 | |

사 천 시 공 보

제 642 호

| 사업 분야 | 세부사업 | 사업개요 | 사업비(백만원) | | 비고 |
|--------------------|-----------------|-------------------------------|--------------|------------|----|
| | | | 기본계획 | 시행계획 | |
| | 사남 중심지 활성화센터 조성 | 센터신축 657.4㎡ 문화장터마당 조성 840㎡ | 3,410 | 3,963 | |
| | 교통 ICT 확충 | | 20 | - | |
| | 경로당 리모델링 | 리모델링 89㎡ | 100 | 150 | |
| | 사계절 다목적구장 조성 | 다목적구장 조성 273㎡ | 210 | 210 | |
| 지 역 경 관 개 선 | | | 1,450 | 760 | |
| | 중심가로 보행자도로 정비 | | 690 | - | |
| | 수변산책로 정비 | 산책로 240㎡ 쉼터 조성 1,080㎡ | 760 | 760 | |
| 지 역 역 량 강 화 | | | 400 | 350 | |
| | 교육 및 견학 프로그램 | 1식 | 160 | 146 | |
| | 주민 복지 프로그램 | 1식 | 120 | 102 | |
| | 홍보마케팅/컨설팅 | 1식 | 50 | 43 | |
| | 운영지원 | 1식 | 70 | 59 | |
| 부 대 비 용 | | | 360 | 517 | |
| | | 기본 및 실시 설계 등 | | | |

사 천 시 공 보

제642호

나. 변경 사유

| 사업분야 | 세부사업 | 변경사유 |
|--------------|---------------|--|
| 기초생활 기반확충 | 사남 중심지 활성화센터 | 당초 계획 부지 보상 협의 불가 및 사업대상지 집적화를 통한 시설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상지 위치 변경 |
| | 교통ICT 확충사업 | 도로과 “시도1호선 확·포장공사” 추진 계획으로 제외 |
| | 경로당 리모델링 | 화장실 구조 변경 등 주민의견 및 부서(기관)협의 의견 반영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 |
| | 사계절 다목적구장 | 기존 활용도가 낮은 게이트볼장으로 대상지 위치 변경 |
| 지역경관 개선 | 중심가로 보행자중심 도로 | 도로과 “시도1호선 확·포장공사” 추진 계획으로 제외 |
| 지역역량 강화 | 교육 및 컨설팅 등 | 실 사업비 조정 |
| 부대비용 | 기본 및 실시설계 등 | 위탁시행으로 인한 사업관리비 등 추가 반영 |

5. 사업시행자 : 사천시장

6. 사업시행기간 : 2017년~2020년(4년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가. 토지조사

| 일련 번호 | 소재지 | | 지번 | 지목 | 편입면적(㎡) | | 소유자 | |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 | 비고 |
|--------------------|-----|----|--------|----|--------------|-----|-----|----|-----------------|----|------------------|----|
| | 면 | 리 | | | 대장 | 편입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의 종류 및내용 | |
| 합 계 | | | | | 4,304 | | | | | | | |
| 1) 사남 중심지 활성화센터 조성 | | | | | 2,105 | | | | | | | |
| 1 | 사남 | 화전 | 1586-1 | 전 | 245 | 122 | 사천시 | | | | | |
| 2 | 〃 | 〃 | 1586-2 | 답 | 499 | 499 | 사천시 | | | | | |
| 3 | 〃 | 〃 | 1586-3 | 전 | 69 | 69 | 사천시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 642 호

| 일 련 번 호 | 소재지 | | 지번 | 지목 | 편입면적(m ²) | | 소유자 | |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 | 비고 |
|------------------|-----|----|---------|----|-----------------------|-----|--------|----|-----------------|----|------------------|----|
| | 면 | 리 | | | 대장 | 편입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의 종류 및내용 | |
| 4 | 〃 | 〃 | 1589-1 | 답 | 695 | 194 | 사천시 | | | | | |
| 5 | 〃 | 〃 | 1589-6 | 답 | 1,055 | 381 | 사천시 | | | | | |
| 6 | 〃 | 〃 | 1589-9 | 답 | 1,042 | 207 | 사천시 | | | | | |
| 7 | 〃 | 〃 | 1589-11 | 전 | 20 | 20 | 사천시 | | | | | |
| 8 | 〃 | 〃 | 1589-13 | 답 | 63 | 61 | 사천시 | | | | | |
| 9 | 〃 | 〃 | 1589-19 | 답 | 327 | 13 | 사천시 | | | | | |
| 10 | 〃 | 〃 | 1589-20 | 답 | 274 | 125 | 사천시 | | | | | |
| 11 | 〃 | 〃 | 1589-21 | 답 | 40 | 40 | 사천시 | | | | | |
| 12 | 〃 | 〃 | 1589-22 | 답 | 220 | 220 | 사천시 | | | | | |
| 13 | 〃 | 〃 | 1589-23 | 답 | 132 | 132 | 사천시 | | | | | |
| 14 | 〃 | 〃 | 1589-48 | 답 | 31 | 19 | 사천시 | | | | | |
| 15 | 〃 | 〃 | 1606-71 | 도 | 762 | 3 | 국(건설부) | | | | | |
| 2) 경로당 리모델링 | | | | | | 89 | | | | | | |
| 1 | 사남 | 화전 | 1271 | 대 | 1,299 | 89 | 병문향도회 | | | | | |
| 3) 사계절 다목적구장 조성 | | | | | | 713 | | | | | | |
| 1 | 사남 | 죽천 | 47-1 | 체 | 696.4 | 691 | 사천시 | | | | | |
| 2 | 〃 | 〃 | 47-2 | 대 | 303.1 | 6 | 사천시 | | | | | |
| 3 | 〃 | 〃 | 47-3 | 공 | 485.6 | 13 | 사천시 | | | | | |
| 4 | 〃 | 〃 | 49 | 도 | 2,896.7 | 3 | 사천시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 642 호

| 일 련 번 호 | 소재지 | | 지번 | 지목 | 편입면적(m ²) | | 소유자 | |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 | 비고 |
|------------------|-----|----|---------|----|-----------------------|-----|------------|----|-----------------|----|------------------|----|
| | 면 | 리 | | | 대장 | 편입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의 종류 및내용 | |
| 4) 수변산책로 정비 | | | | | 1,397 | | | | | | | |
| 1 | 사남 | 화전 | 1589-2 | 천 | 528 | 165 | 사천시 | | | | | |
| 2 | 〃 | 〃 | 1589-5 | 답 | 252 | 1 | 사천시 | | | | | |
| 3 | 〃 | 〃 | 1589-6 | 답 | 1,055 | 674 | 사천시 | | | | | |
| 4 | 〃 | 〃 | 1589-19 | 답 | 327 | 234 | 사천시 | | | | | |
| 5 | 〃 | 〃 | 1589-38 | 도 | 13 | 1 | 사천시 | | | | | |
| 6 | 〃 | 〃 | 1589-48 | 답 | 31 | 12 | 사천시 | | | | | |
| 7 | 〃 | 〃 | 1590 | 천 | 3,160 | 72 | 경상남도 | | | | | |
| 8 | 〃 | 〃 | 1592-2 | 천 | 2,654 | 80 | 국(국토 부) | | | | | |
| 9 | 〃 | 〃 | 1606-36 | 천 | 281 | 55 | 국(건설부) | | | | | |
| 10 | 〃 | 〃 | 1606-71 | 도 | 762 | 103 | 국(건설부) | | | | | |

8. 본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관계 법령 의제 사항

가.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

※ 하천점용허가 내용 별도 붙임

9. 관계도서는 사천시청 도시재생과(055-831-3240),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지역개발부(055-851-8146)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642호

붙임)

하 천 점 용 허 가 증

제2019-147호

| | | | |
|--------------------------|--|---------|------|
|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사천시청) | | |
| 성명(법인명) | 사천시장(도시재생과) | | |
|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등록번호) | 619-83-00049 | | |
| 하 천 명 칭 | 죽천천 | 하 천 등 급 | 지방하천 |
| 점 용 장 소 | 경남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 1589-2번지 외 12필지 [1541-2, 1541-10, 1541-11, 1541-12, 1589-38, 1590, 1592-2, 1606-36, 1606-57, 1606-69, 1606-70, 1606-71] | | |
| 점 용 면 적 | 영구점용 : 700㎡ 일시점용 : 70㎡ | | |
| 최 초 허 가 일 | 2019. 12. 13 | | |
| 점 용 기 간 | 일시점용 : 2020. 01. 01 ~ 2020. 12. 31 영구점용 : 2020. 01. 01 ~ | | |
| 허 가 조 건 | "별첨과 같음" | | |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사 천 시 장 [인]

비고: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642호

허 가 조 건

- 공사는 제출된 계획서에 따라 사업시행자 책임 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시행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간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수해 및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보상, 소송 등 피허가자가 전액 부담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및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비산.먼지.흙탕물 등으로 인한 민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오염에 대한 저감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원발생시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 점용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유사시 피허가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 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하여 하천의 유수소통 능력에 지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허가 이후 하천법 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 동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 동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동법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와 관련하여 하천관리청(하천공사 대행자를 포함한다)에서 허가의 취소.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피허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점용공사 시행 또는 점용으로 인하여 하천 및 하천부속물에 피해를 끼치거나 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하천유지·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나 하천의 수질오염 및 보건위생상 위해한 행위는 일절 금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되며 전액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허가목적, 허가규모(시설물, 면적 등), 허가장소의 일체의 점용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공사 완료시는 공종별 전,중,후 사진 첨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42호

- 점용허가로 인한 권리.의무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점용허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 하천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와 하천 및 부속물을 손괴하거나 손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상기 허가조건 및 기타 제반법령 미 이행시는 하천법 제69조 및 허가조건에 따라 허가의 취소, 변경, 효력의 정지 등을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취소 시는 하천을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하고 취소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하천과 관련하여 조건사항 해소를 위한 변경 외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 「하천법」외 다른 법령에 의한 신고, 협의,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은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42호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9.8>

소하천의 점용허가 공고

사천시 공고 제2019-1378호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의 점용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사 천 시 장 (직인)

| | | | | |
|---------------------|--------------|--|---------------------|----------------------|
| 시행자 (점용·사용자) | 상호 및 명칭 |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장(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 | |
| | 대표자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장 | 주소 | 경남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 1803 |
| 소하천명 | | 정골천, 먹골천, 옥동천 | | |
| 공사 (점용·사용) 개요 | 위치 |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592번지 외 5필지(562-2, 562-4, 796-35, 성방리 428, 마곡리 668-11) | | |
| | 면적 | 159.0㎡ |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 |
| | 기간 | 영구 | | |
| | 목적 및 사유 | 마곡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 | |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 및 관련서류 1부(건설수도과 비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사 천 시 공 보

제 642 호

사천시 공고 제2019-1390호

어업면허 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의한 어업면허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사 천 시 장

□ 어업면허 내역

| 면허번호 | 어업종류 (양식방법) | 어장 위치 | 면적 (ha) | 어업 시기 | 면허 유효기간 | 면허일자 | 어업권자 | | 제한조건 | 비고 |
|-------------|----------------|----------|------------|--------------------|-------------------------------|------------|-------------------|-------|---------------|----------------------|
| | | | | | | | 주 소 | 성 명 | | |
| 사천시 제65호 | 패류양식 (살포식) | 서포 내구 | 4.00 | 1.1. ~ 12.31 | '19.12.29. ~ '29.12.28. | '19.11.20. | 사천시 서포면 내구리 | 내구어촌계 | 수산물거래 법령준수 | 사천시 패류양식 제13호 재개발 |

※ 어장의 위치 및 구역도 : 사천시 해양수산물과 비치

사 천 시 공 보

제642호

사천시 공고 제2019-1395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2항에 의한 소유자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동법 제24조의2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명령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9. 12. 19.
사 천 시 장

1. 공 고 명 칭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9. 12. 19. ~ 2020. 01. 03.(15일간)
3. 공 고 대 상

| 신청대상 자동차 | | | 운행정지 명령일자 | 운행정지 사유 |
|----------|---------------------|-----|---------------|--|
| 등록번호 | 차명 | 소유자 | | |
| 88소0688 | 포터II (PORTER II) | 백*훈 | 2019. 12. 19. | '19.04.17.자 계약통지 이후 리스차량에 대한 차량 반납 거부로 인하여 운행정지명령 신청함. |

4. 공 고 내 용

- 1)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1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의2 제2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공고하오니, 차량운행자께서는 해당 자동차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고 운행정지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2)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7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동법 제82조(벌칙) 제2의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 사용자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함.

- 3)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천시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팀(055-831-33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